

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

소방청(위험물안전과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화학물질"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.
 - 가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
 - 나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
 - 다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등
 - 라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
 - 마. 그 밖에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
2. "화학사고"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, 시설의 결함·노후화, 자연재해,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유출·누출되거나 화재·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.
3. "화학사고 대응"이란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오염확산방지 및 인명구조·구급 등을 통해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지식·기술·장비를 활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, 화학사고 대응 업무역량에 따라 별

표 1과 같이 대응능력 등급을 구분한다.

4. "평가시험"이란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식·기술·장비활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평가하는 시험으로,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구분한다.
5. "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"란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·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·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.
6. "교육기관"이란 중앙소방학교, 지방소방학교, 소방교육대(이하 "소방학교등"이라 한다)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 별표 2, 별표 3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장비·시설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로부터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
제2장 교육 및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

제4조(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·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(이하 "평가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·발전에 관한 사항
2.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·조정에 관한 사항

3.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실태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 4. 교육기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
 5. 자격시험의 항목·시기·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
 6. 자격시험 장비·시설기준 및 자격 등급에 관한 사항
 7. 응시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
 8. 평가시험 개선 등 수정·보완에 관한 사항
 9. 그 밖의 평가시험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- ③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평가위원회 구성)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다만, 제4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2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.

1.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
2. 소방청 구조과장
3.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
4. 중앙119구조본부의 주무과장
5. 각 소방학교등의 주무과장
6. 화학물질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화학물질 관련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
7. 화학물질 관련 기관·단체·교육기관의 임원·교수

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,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

서 지명한다.

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·의결에서 제외된다.

1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가 심의대상 안전에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
2.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전의 당사자인 경우

3. 그 밖에 심의대상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⑦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⑧ 위원장은 위원이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⑨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위험물안전과 소속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 업무의 주무계장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 직원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.

제6조(평가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와 장소, 안전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

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, 의견진술, 그 밖에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전문위원회)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운영 전문위원회
2. 평가시험 전문위원회

② 전문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배분하며,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3장 교육기관

제8조(교육기관 신청)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소방학교등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의 기관은 별표 2, 별표 3에 따른 등급별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,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업무 등 운영조직·구성
2. 재정계획서
3. 교육운영계획

가.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나. 강사진 운영,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

다.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

라. 교육과정 교육비(산출 근거 포함)

마. 교육 방법 및 절차

4. 교육장비·시설(기자재 등을 포함한다) 현황

가. 별표 2의 등급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

나. 별표 3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현황

5. 그 밖의 교육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교육기관 선정) ① 소방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.

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다.

③ 소방청장은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교육기관 운영)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4의 교육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내용 일부를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)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4에서 정하는 화

화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.

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·관리해야 한다.

제12조(교육기관 선정의 취소)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운영을 한 경우
2. 교육기관의 선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
3. 장비·시설이 기준에 미달할 때
4. 2년간 교육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
5. 그 밖에 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

②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다시 선정될 수 없다.

제13조(재선정) 교육기관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교육기관으로 다시 선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규 선정절차에 준하여 교육기관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4장 평가시험 운영 및 접수

제14조(평가시험의 실시) ① 평가시험은 등급별로 실시하고, 등급별 평가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.

② 평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
③ 소방청장은 시·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험 일정을 정할 수 있다.

④ 소방청장이 평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, 시험일시, 장소,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제15조(응시자격) 화학사고 대응능력 등급별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가.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나.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

2.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가.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,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

나.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,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

제16조(응시원서 접수) ① 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11조에 따른 교육이수자 수료증

2. 재직증명서

②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,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험위원의 위촉) ① 소방청장은 화학물질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협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의 출제·선정·채점·검토·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(이하 "시험위원"이라 한다)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에 합격한 사람
2. 화학물질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소방학교 등의 교수·교관
3. 119화학구조센터, 화학구조대 등 화학물질 전문 대응부서에서 그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
4. 화학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되어 그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
5. 화학사고 대응과 관련한 학식과 경협이 풍부한 사람

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소방청장은 시험위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.

④ 소방청장은 시험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해당 시험위원은 그 통보를 받은 때부터 5년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.

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

지급할 수 있다.

제5장 필기시험

제18조(합격기준) 필기시험은 개인별로 실시하며, 합격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.

제19조(출제 및 편집) ① 소방청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,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은행에서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.

③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1선택형으로 하며, 25문항을 출제한다.

④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0조(필기시험의 실시) ① 소방청장은 출제과목, 문항 수, 보안대책 등 필기시험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 시행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소방청장은 필기시험을 마친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한다. 다만, 컴퓨터기반시험(CBT)을 실시한 경우 파일의 형태로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.

③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,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, 그 명단을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.

제21조(채점관리) ① 채점은 시험위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선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채점관"이라 한다)이 하며, 채점관은 공정하게 채점하여야 한다.

② 채점관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득점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6장 실기시험

제22조(응시대상) 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그 다음다음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기간 안의 응시 횟수는 개인별 2회로 한다.

제23조(평가종목 구분 등) ① 실기시험은 소방청장이 승인한 등급별 화학사고 대응능력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.

② 평가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은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.

2.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.

제24조(실기시험의 실시) ①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시험위원은 화학사고 대응능력 실기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소방청장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각 교육기관별 교차 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차감독관에 대한 수당 등은 소방청장이 지급한다.

제25조(합격기준) ① 실기시험은 개인별평가와 조별평가로 실시하되, 조별평가의 경우 개인별로 점수를 준다.

② 실기시험 합격기준은 평가종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, 모든 종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.

제7장 합격자 발표

제26조(최종합격자 결정) 소방청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.

제27조(합격자 발표) ① 소방청장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.

② 최종합격자 명단은 소방청, 응시지역의 교육기관 및 각 시·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.

제8장 자격증 발급

제28조(자격증 발급 등) ① 소방청장은 등급별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7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을 발급하고, 별지 8호서식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자격증은 시·도 소방본부 또는 교육기관으로 일괄 발급할 수 있으며, 소속 기관의 장이 합격한 사람에게 직접 수여한다.

③ 시·도 소방본부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장 사후 관리

제29조(사후 관리 등) ①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운영, 장비·시설 현황, 평가시험 등의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의

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, 이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점검·평가 결과가 제10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.

⑤ 소속기관의 장은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 취득자를 구조대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부서 및 교육·훈련 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30조(재검토기한)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무경력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훈령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1. 119화학구조센터 또는 화학구조대 등 화학사고 전문 대응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제11조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교육 수료증을 받은 사람
2. 화학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되어 그 업무를 1년 이상 수행

- 하고 제11조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교육 수료증을 받은 사람
3. 소방학교, 소방교육대 및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포함한 화학사고 대응 관련 교육(단일 교육에 한한다)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
 4.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위탁교육 훈련 중 화학사고 대응 관련 교육(단일 교육에 한한다)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
 5. 인명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, 자격증 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

부 칙(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)<제327호, 2023.06.16.>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366호, 2024.4.1.>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화학사고 대응능력 등급 구분(제2조제1항제3호 관련)

등급 구분	등급별 업무역량 등
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	● 업무역량 : 표준 구조 활동과정(Process)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현장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● 업무내용 : 사고유형 및 위험성 분석, 현장 초기대응, 방어적 대응, 긴급제독 수행 ● 자격대상 :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
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	● 업무역량 : 독자적인 현장활동 수행뿐만 아니라 활동에 관한 업무지시와 업무분석이 가능하며, 화학사고 대응 관련 교육 및 자문활동도 수행할 수 있음 ● 업무내용 : 전문가 수준의 위험확산 예측, 대응계획수립, 공격적 대응, 탐지장비 운용, 완전제독 수행 ● 자격대상 :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

[별표 2]

등급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

(제8조제4호 가목 관련)

■ **교육생/응시생 30명 기준**

II 급 교육기관(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)		I 급 교육기관(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)	
장비명	수량	장비명	수량
B급 화학보호복(선택장비)	5	A급 화학보호복	5
C급 화학보호복	10	B급 화학보호복(선택장비)	3
화학용 전면형마스크 및 필터	10	C급 화학보호복	10
공기호흡기	5	공기호흡기	5
복합가스측정기	2	화학용 전면형마스크 및 필터	10
pH시험지(Paper)	10	간이제독텐트	1
경계구역 설정라인(빨강) 및 경계봉	4	경계구역 설정라인(빨강) 및 경계봉	4
경계구역 설정라인(노랑) 및 경계봉	4	경계구역 설정라인(노랑) 및 경계봉	4
가이드북(ERG/KEY INFO 등)	30	가이드북(ERG/KEY INFO 등)	30
대응상황판	2	대응상황판	2
무전기	10	무전기	10
화학흡착포(BOX)	5	들것(주들것/분리형들것/가변형들것)	2
흡착분	5	복합가스측정기	2
소방펌프차	1	pH시험지(Paper)	10
		실링백(Leak Sealing Bags)	1
		공기주입형 누출제어장비(누출방지 밴드, Leak Sealing Bandages)	1
		공기주입형 누출제어 장비(누출방지창, Leak Sealing Lance)	1
		누출제어슬리브(Sealing Sleeve)	1
		플랜지용 배수백(Vacuum Leak Sealing Bags)	1
		고압누출방지호스(Sealing Hose)	1
		화학흡착포(BOX)	5
		흡착분(펜스)	5
		소방펌프차	1
		훈령용 마네킵(50kg)	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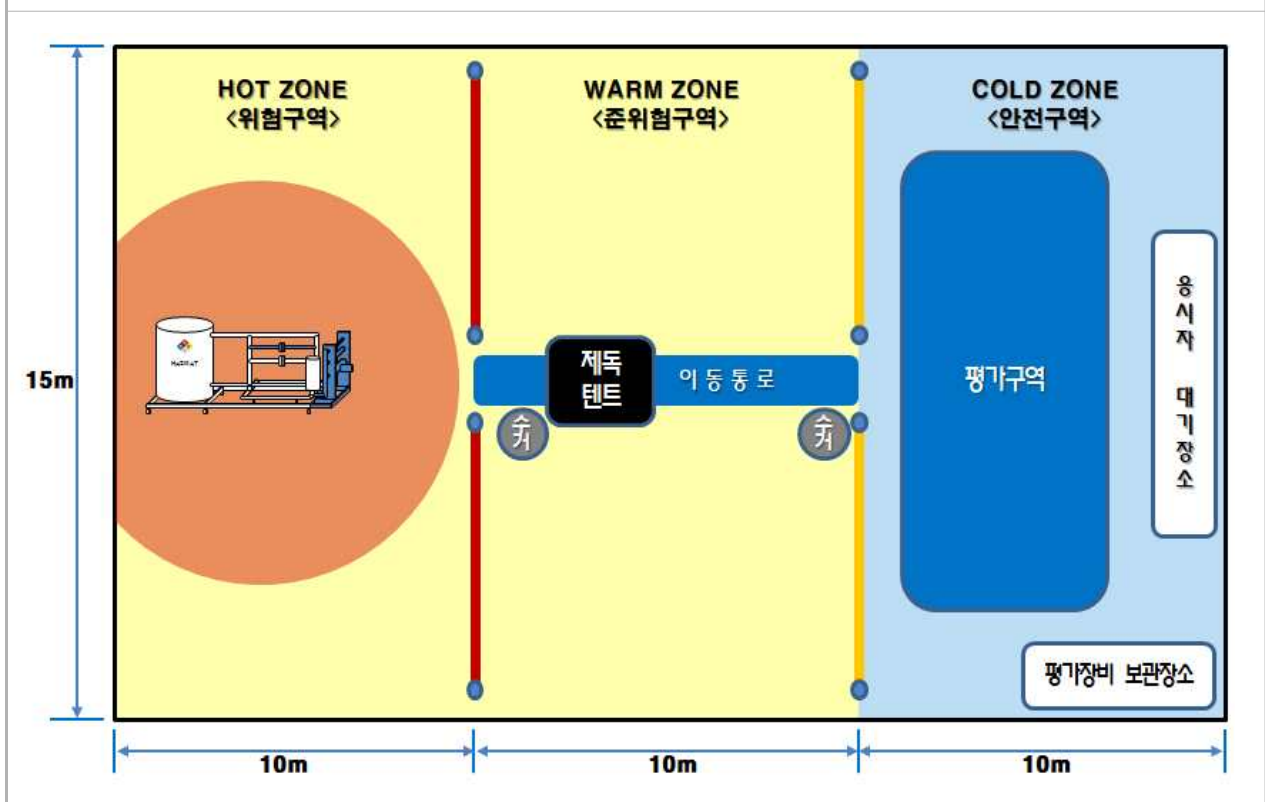
[별표 3]

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

(제8조제4호 나목 관련)

시설	세부규격	수량
강의실	30석 이상의 책상과 의자를 갖추고, 빔프로젝터와 PC, 음향시설을 갖춘 것	1개실 이상
누출시뮬레이터	별표2 장비보유 기준의 누출차단장비를 적용할 수 있는 탱크와 배관이 설치된 시설로써 누출상황을 구현할 수 있을 것	1개 이상
실습 교육 및 평가시설	- 평지로써 안전한 공간일 것 - 실기시험 평가장은 15×30m 규격일 것 - 소방펌프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일 것 -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근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을 것	1개소 이상

실기 교육 및 시험 평가장 규격



교육운영 기준(제10조 관련)

구 분	기 준
교육시간	●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 : 10시간 이상 ●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: 20시간 이상 ●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: 30시간 이상
교과목 편성기준	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별 아래의 <u>교과목 60퍼센트 이상</u>을 교육 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●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 - 화학물질의 이해 - 화학보호복의 분류 및 착용 - 화학사고 대응 기본절차 ●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- 위험물질 안전관리 - 화학물질의 이해 및 사고대응체계 - 화학물질 대응사례 - 화학물질 현장 초기대응(방어적 대응) - 화학물질 식별(ERG, KEY INFO GUIDE 등 가이드북 활용법) -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평가종목 실습 ●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-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 - 화학물질 식별 및 정보 분석 - 화생방 사고사례 분석 및 대응절차 - 화학물질 중화 및 회석 - 화학물질 누출통제 및 확산방지 - 제독절차 및 운용 -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평가종목 실습 - 화학사고 대응 종합훈련

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평가기준

■ 응시대상

- ◎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◎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

■ 평가방법

구 분	평 가 방 법	합격 결정기준
필기시험	객관식 4지 1선택형 (25문항)	70점 이상
실기시험	8개의 평가종목 중 “공통” 2개 종목은 모두 평가하고, 나머지 “추첨 I~Ⅲ” 6개 종목 중 3개 종목 선정(추첨)	종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평균 70점(총점 350점) 이상 득점

※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실기시험 응시

■ 실기시험 평가종목

평가분야	평 가 종 목	
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	공통	① C급 화학보호복(공기호흡기 포함) 착용 및 탈의 ② 오염지역 통제선 설치
	추첨 <Ⅰ>	③ 화학물질 식별 ④ 화학물질 정보확인
	추첨 <Ⅱ>	⑤ 화학물질 누출탐지 ⑥ 현장대원 긴급제독
	추첨 <Ⅲ>	⑦ 화학물질 누출통제 I (기체) ⑧ 화학물질 누출통제 II (액체)

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평가기준

■ 응시대상

- ◎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
- ◎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

■ 평가방법

구 분	평 가 방 법	합격 결정기준
필기시험	객관식 4지 1선택형 (25문항)	70점 이상
실기시험	10개의 평가종목 중 “공통” 3개 종목은 모두 평가하고, 나머지 “추첨 I ~Ⅲ” 7개 종목 중 3개 종목 선정(추첨)	종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평균 70점(총점 420점) 이상 득점

※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실기시험 응시

■ 실기시험 평가종목

평가분야	평 가 종 목	
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	공통	① 화학물질 식별 및 정보확인 ② A급 화학보호복 착용 후 인명구조 ③ C급 화학보호복 착용 후 경계구역 설정
	추첨 <Ⅰ>	④ 누출방지배수백 누출차단 ⑤ 누출방지밴드 누출차단 ⑥ 플랜지배수백 누출차단
	추첨 <Ⅱ>	⑦ 누출방지슬리브 누출차단 ⑧ 고압누출방지호스 누출차단
	추첨 <Ⅲ>	⑨ 간이인체제독텐트 대원제독 ⑩ 제독대원 C급 화학보호복 탈의

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[] 교육기관 선정 신청서
2급[]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① 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대표자	이메일주소(홈페이지)
	소재지	전화
		팩스
② 설립 목적		
③ 설립 연월일		
④ 시설 현황		
⑤ 업무범위	교육인원 명	연간교육 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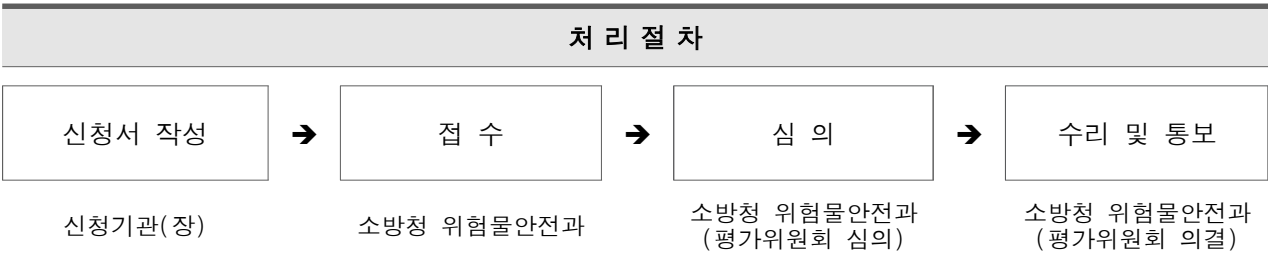
「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」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 선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(서명 또는 인)

소방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교육 업무 등 운영조직 구성 현황 1부 2. 재정계획서 1부 3. 교육운영계획 1부 4. 교육장비·시설 현황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

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				
선정기관	기관명		대표자	
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
	소재지			
	전화번호			
선정내역	선정번호	제 호		
	유효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
	선정조건	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[]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[]		
「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」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으로 선정합니다. 년 월 일 소방청장 직인				

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

일련 번호	발급일자	선 정 기 관				선 정 내 역		비고
		기관명	대표자	법인등록번호	주 소	유효기간	선정조건 (1급 또는 2급)	

297mm× 210mm(백상지 80g/㎡)

제 호

수 료 증

성 명 : (한자:)

생년월일 :

주 소 :

위 사람은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
화학사고 대응능력 ○급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○ 교육과정 : 예)중앙소방학교 제○기 화학사고 대응능력 ○급 과정

○ 교육기간 : 0000.00.00 ~ 0000.00.00 (○○시간)

년 월 일

교육기관의 장

직인

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

발급 번호	교부 일자	수료자 인적사항			교육기간 (0000.00.00~00.00)	등급
		성 명 (한 자)	생년월일	주 소		
		()				
		()				
		()				
		()				
		()				
		()				
		()				
		()				
		()				
		()				
		()				
		()				
		()				
		()				
		()				

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				사 진 3cm×4cm (3개월 내 촬영 사진)
■ 자격의 등급 : [] 1급 [] 2급 ■ 평가의 종류 : [] 필기 [] 실기				
성 명 (한자)	()	생년월일		
주 소	(전 화:) (휴대전화:)			
응시 자격	1.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수료	교육기관		
		수료기간		
		수 료 증	가. 발급번호() 나. 발급일자()	
	2. 교육수료 이외 사항	1급	[]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발급일로부터 2년 경과한 소방공무원 [] 기타 사항()	
2급		[]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[] 기타 사항()		
이 전 합격사항	필기 평가시험 (실기 평가시험 응시생 기재)	1. 운영기관() 2. 평가일자()		
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응시자 (서명 또는 인) 소방청장 귀하				
응시번호				

..... (절) (취) (선)

응시번호	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			사 진 3cm×4cm (3개월 내 촬영 사진)
	■ 자격의 등급 : [] 1급 [] 2급 ■ 평가의 종류 : [] 필기 [] 실기			
성 명		생년월일		
년 월 일 소 방 청 장 직인				

등록번호 : 제 0000-0000호

화학사고 대응능력 ○급 자격증

소 속 :

성 명 : (한자 :)

생년월일 :

시 험 명 :

합격일자 :

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(소방청 훈령 제00호)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.

발급일자 : 0000. 00. 00.

소 방 청 장
National Fire Agency

직인

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발급대장

자격 번호	자격 등급	발급일자	인 적 사 항			자격시험 합 격 일	비고
			성 명 (한 자)	생년월일	소속기관		
			()				
			()				
			()				
			()				
			()				
			()				
			()				
			()				
			()				
			()				
			()				

297mm× 210mm(백상지 80g/㎡)